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5415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C

변론 종결 2016. 3. 16.

판결 선고 2016. 4. 20.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529370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충주시 D 대 535.3㎡에 관하여 2014. 7. 30.

체결된대물변제계약을 50,172,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172,4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14. 3. 1. 주식회사 제이건기로부터 콘크리트펌프를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 A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59,4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4. 3. 1.부터 2014. 8. 25.까지로 하여 A의 주식회사 제이건기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료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A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보험계약에 기한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주식회사 제이건기는 2014. 8. 4. 원고에게 A의 대여료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9. 5. 주식회사 제이건기에게 보험금 59,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의 재산처분행위

(1) B은 2014. 7. 30. 피고와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7. 31.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총주시 D 대5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14. 7. 30.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시가 700,172,400원 상당인 이

사건토지뿐이었으나, B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뒤에서 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 등이 있어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제이건기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일부터 불과 5일 만인 2014. 8. 4.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남짓 지나 보험금을 지급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B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채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B이 오랫동안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거래 채권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일한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은 A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사업과 관련된 거래상의 채권은 A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시가가 700,172,400원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830,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서충주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50,000,000원 +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80,000,000원(피고의 B에 대한 잔존 대여금 채권 200,000,000원 + E의 A에 대한 유류대금 채권 18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의 2015. 4. 30. 당시의 가액이 700,172,400원인 사실, B이 2005. 8.24.

서충주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80,000,000원으로(이후 채권최고액이 490,000,000원과 590,000,000원으로 차례로 증액되었다), 채무자를 안창근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가 450,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2012. 8. 31. B에 게 250,00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은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B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200,000,000원인 사실,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의 남편 E는 2012.

1.경부터 A에게 유류를 공급하였고,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이 약 18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B이 A의 E에 대한 채무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B이 피고에 대한 2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음을, A의 E에 대한

180,000,000원의 유류대금 채무가 있음을 각 확인하며, B은 차용금 채무와 유류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90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익금이 발생하면 모든 비용을 정산하여 제3채권자인 F에게 100,000,000원까지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잉여금은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다 제1호증 내지 을다 제3호증, 을다 제4호증의 1, 2,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가 전업주부이고 E가 2012. 1.경부터 A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B와의 금전거래의 주체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E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2012. 8. 31. 체결된 데다가 A이 2013년까지는 유류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B와 피고 사이에 차용금 증서가 작성되었고, B와 피고 사이 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300,000,000원은 피고가 B에게 대여한 250,000,000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담보채무의 120% ~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E, A과 B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상호 정산하려고 하였던 채무에 A의 E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가 포함되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에는 A의 E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B와의 금전거래의 주체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E이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서충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였고, E의 지시로 2014. 2. 27.B에게 2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서 43,000,000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기존 채무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힘들다는 B의 간절한 부탁 및 B와 E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피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토지의 2015. 4. 30. 당시의 가액이 700,172,400원인 사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서충주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가 450,000,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B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200,0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22.

서충주농업협동조합에게 채무를 변제하였고, 서충주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4. 8. 22. 모두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으로 추인되는 700,172,400원에서 위와 같이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인 50,172,400원(=700,172,400원 - 450,000,000원 -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50,172,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0,1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성우, 판사 여현주, 판사 홍득관